


❖ 법인의 경영책임자(사장, 대표이사 등) 또는 사업주(개인에 한함)가 응답하시고,  
팩스 또는 이메일(스캔 파일 또는 사진)로 응답지를 회신(~/3/31(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팩 스 : 051-629-6463  
이메일 : suhyun20@gmail.com

 <b>중소규모 사업장(5인 이상 50인 미만) 안전관리 준비 현황 설문조사</b>		본 조사는 고용노동부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사)한국안전학회 주관 하에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법령 인식 및 준비상황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 사 명	대표전화	업 종	①( )제조 ②( )건설 ③( )운수 ④( )도소매·서비스·보건 ⑤( )기타
소 재 지 (사·군·구)	주요품목/서비스	상시근로자	①( )5~9인 ②( )10~19인 ③( )20~29인 ④( )30~49인 ⑤( )기타
도급·위탁·용역 등 하청여부	①( )사내하청(수급)업체 ②( )사외하청업체 <input type="checkbox"/> 유지보수/점검 <input type="checkbox"/> 운송 <input type="checkbox"/> 위탁주문생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③( ) 해당 없음		

'21.1.26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울러 '22.1.27부터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에 시행되었고 '24.1.27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안전 법령 인식 및 이행

- 1 중대법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들어보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전혀 모른다
- 2 아래 나열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알고 계십니까?**  
① 모두 알고 있다 ② 대부분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전혀 알지 못한다
- \* 중대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① 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②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시정명령 이행
  - ③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④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 ⑤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점검 ⑥ 안전보건 예산편성·집행
  - ⑦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 ⑧ 안전보건 인력 배치 ⑨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의견에 따른 개선조치
  - ⑩ 비상상황 대응매뉴얼 마련·조치 ⑪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 ⑫ 관계수급인 등의 평가기준·절차 등 마련·점검
  - 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 3 귀사는 중대법 상 안전·보건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습니까?**  
① 이미 모두 갖추었다 (☞ ① 답변 시 4로 이동)  
② 현재 준비 중이다 ③ 준비하지 않고 있다 (☞ ②~③ 답변 시 3-1로 이동)
- 3-1 귀 사는 내년 '24.1.27. 법 시행 전까지 위의 중대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 수 있습니까?**  
① 그렇다 (☞ 4로 이동) ② 그렇지 않다 (☞ 3-1-1로 이동)
- 3-1-1 중대법상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① 안전 담당 인력 부족 ② 안전조치 요구 수준이 과도함 ③ 의무 항목이 너무 많음  
④ 준비 기간이 부족함 ⑤ 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⑥ 관심이 없음  
⑦ 기타(이유 작성 → )
- 4 위 안전보건 의무 (2번 문항 하단 박스 내 13개 항목) 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 번호 선택)**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5 위 안전보건 의무 (2번 문항 하단 박스 내 13개 항목) 중 귀 사가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 번호 선택)**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6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중대법의 적용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① 기술·법령 등 교육·컨설팅 ② 재정지원 ③ 중대법 적용유예·제외 ④ 처벌수준 완화
-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 기타의견(필요 조치 작성) : \_\_\_\_\_
- 7 중대법 위반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될 경우 귀 사의 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 중대법 제6조 ①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같이 집행할 수 있다.
- ① 경영활동 중단 등 중대한 영향이 있다. ② 경영상 불편 등 일부 영향이 있다  
③ 전혀 영향이 없다

### 사업장 안전관리

- 8 귀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8-1~3 답변) ② 없다 (☞ 9 답변)
- 8-1 산업재해가 있었다면 부상·질병 정도는 어떻습니까? (중복가능)**  
① 경미한 부상·질병 재해 발생(기본 치료 수준) ② 중대한 부상·질병 재해 발생(입원 치료 수준) ③ 사망사고 발생
- 8-2 산업재해 발생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중복가능)**  
① 재해발생 원인 파악 및 개선 ②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③ 안전·보건진단 및 컨설팅 ④ 안전·보건예산 증액 ⑤ 안전인력 배치 및 증원  
⑥ 작업 전 종사자 대상 안전 유의 사항 주지 ⑦ 별도 조치 못함
- 8-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① 설비고장 및 노후화 ②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③ 근로자 작업 전문성 미확보  
④ 안전조치 어려움 및 부족 ⑤ 안전관리인력 부족 ⑥ 안전보건 투자재정 부족  
⑦ 기타(원인 작성 → )
- 9 안전·보건 활동·관리업무 인력 또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운영 (☞ 9-1 답변) ② 미운영 (☞ 10 답변)
- 9-1 안전·보건 활동·관리업무 담당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특정 직원이 겸직 ( 명) ② 전담자 지정 ( 명)  
③ 외부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수행
- 10 안전관리를 위해 구매한 물품이 있습니까? (중복가능)**  
① 없다. ②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장갑 등) ③ 안전보건표지  
④ 안전펜스, 경보 등 방호장치 ⑤ AED 등 응급구호장치  
⑥ 기타(구매물품 작성 → )
- 11 귀 사에서는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① 수행 (□정기적 / □비정기적) ② 미수행
- 12 귀 사는 종사자로부터 사업장의 안전보건의견을 청취하십니까?**  
① 청취 (□정기적 / □비정기적) ② 미청취
- 13 귀 사에는 비상대피와 구호조치 관련 방법 또는 지침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14 귀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관련 종사자에게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있습니까?**  
① 보고 받는다 ② 보고 받지 않는다
- 15 귀하는 '위험성평가'를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 15-1 답변) ② 모른다(☞ 16 답변)
- \* 위험성 평가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 15-1 귀 사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① 수행 (□정기 수행 / □비정기 수행) ② 미수행 (□과거 수행 / □과거 미수행)

### 기타 의견

- 16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주요내용과 설문지 작성요령 등은 불임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설문지 작성요령 등 안내 》

❖ 설문

- **[설문 및 답변]** 본 조사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령 인식, 이행 및 준비상황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목적이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 문항에 따라 해당 항목 번호 또는 괄호 안에 'O' 또는 'V' 표시, 아리비아 숫자 기입, 문장 작성 등 적절한 방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구책임자에게 부탁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동국대학교 서용윤 교수(suhyun20@gmail.com)

《 주요내용 안내 》

처벌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기본 정보

- **[회사명·소재지·대표전화]** 회사명, 소재지 및 대표전화 등은 특정 업체 및 개인 등의 중복 응답 방지를 위한 확인 용도입니다.
-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확인 가능한 기업공시 또는 홍보 등 외부에 알려진 회사명, 소재지 및 대표전화 등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 구분]** 동 업종 구분은 '사업체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상 업종 분류(대분류 및 중분류)에 기초하여 업종별 종사자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습니다.
- 동 분류에 기초하여 해당 란에 체크해주시고, 구분이 어렵거나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기타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상주하는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② 파견계약에 따른 파견근로자, ③ 사무직 및 현장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외국인근로자(불법채류 상관없음)를 포함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 3자의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합니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원하청여부]** 귀사의 제품생산/건설공사/서비스 과정에서,  
- 원청과 물리적인 장소를 공유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인접 장소에서 원청과 계약 기간 동안 상주하며 업무(도급, 위탁, 용역 등)를 수행하는 경우, '사내하청(수급)업체'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청의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출입하거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청의 요구사항을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외하청업체' 항목과 해당유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청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특정업체만을 위한 노무제공 계약 관계도 없는 경우 '해당없음'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란?

- 제2조(정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은?

- 제2조(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 어떤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이 있을까?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처벌내용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 제3조(적용범위), 부칙 제1조(시행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 1. 26. 공포

2024. 1. 27.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예정